

도시관리계획(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92호(2020. 12. 31.)로 결정(변경)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3년 8월 10일

강 동 구 청 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92호(2020. 12. 31.)로 결정(변경)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길동 415-1번지에 대하여 주차출입구 위치를 변경지정(경미한 사항)하고자 하는 사항임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-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	계획내용
변경	차량동선	주차출입구	■ 2개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6m이상 도로 중 좁은 도로에 주차출입구 지정 ※ E2가구의 415-1번지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으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출입구 위치 변경

■ 변경 사유서

변경내용	변경사유
길동415-1번지 주차출입구 위치	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출입구 위치 변경을 신청함

III. 지구단위계획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등 결정도 변경없음

■ 관계도서: 생략

※ 고시문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